

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정의의 변천사

"한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" 컨퍼런스 제3세션

김가연 변호사
사단법인 오픈넷

“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”의 정의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

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, 유사 성교 행위,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,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

형량 비교

강간(형법 제297조)

- 3년 이상의 유기징역

아동·청소년 강간(제7조 제1항)

-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

아동·청소년 매매(제12조)

-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

음화제조 등(형법 제244조)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
500만원 이하의 벌금

아동음란물 제작 등(제11조 제1항)

-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

- 30년-10년 신상정보 공개 및
최대 10년 취업제한

형량 비교

음화반포 등(형법 제243조)

- 음란한 문서, 도화,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,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벌칙(정보통신망법 제74조)

-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영리 목적 아동음란물 배포 등(제11조 제2항)

- 10년 이하의 징역

아동음란물 배포 등(제11조 제3항)

-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

- 30년-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최대 10년 취업제한

형량 비교

음화제조 등(형법 제244조)

- 음화반포 등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, 소지, 수입 또는 수출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- 음란물 단순 소지 처벌 X

영리 목적 아동음란물 소지(제11조 제2항)

- 10년 이하의 징역

알면서 아동음란물 소지(제11조 제5항)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

- 30년-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최대 10년 취업제한

2011년 아동음란물 정의 개정

2011년 개정 이전:

아동 · 청소년이 등장하여...

2011년 9월 15일 개정 이후:

아동 · 청소년 또는 아동 ·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
표현물이 등장하여...

2011년 아동음란물 정의 개정

- 2011년 “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또는 사람”을 포함시켜 정의 확대
- 실제 아동 보호를 위해 엄중히 적용되던 모든 규제가 만화 등 가상 아동음란물에도 똑같이 적용됨
- 아동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 적용
- 음란성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됨:
“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”

2011년 아동음란물 정의 개정의 효과(?)

- 2011년 아동음란물 관련 사건 22배 증가!

연도	접수	기소	불기소	기타
2010	82	38	26	14
2011	100	58	23	21
2012	2,224	775	433	940

※ 정보공개센터 대검찰청 정보공개청구 결과



박해일 김무열 김고은 주연 (혜리엔드) 정지우 | 카탈린 비스트롬이 소설 원작 | 2012.04

2012년 아동음란물 정의 재개정

2011년 개정:

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...

2012년 개정:

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...

사법부의 대응

- 2013년 5월 성인 교복물 위헌제청(의정부)
- 2013년 6월 성인 교복물 위헌취지 무죄(안산지법)
- 2013년 8월 일본작품 블랙바이블 위헌제청(수원지법)
- 2014년 9월 대법원 1,2,3부 성인 교복물 무죄(“여성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“)
- 2014년 9월 애니메이션 위헌취지 무죄(수원지법 성남지원)

2015년 헌재 합헌 결정

-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해 합헌 결정(합헌 5, 위헌 4)
 - (1)성인 교복물 사건에서 “죄형법정주의 위반, 표현의 자유, 청소년의 성적결정권의 침해 및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(2013헌가17),
 - (2) 만화 사건에서 “만화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,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”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(2013헌가24) 등
- 합헌 의견: ‘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’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

2019년 CRC OPSC 지침

- 2019년 9월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, CRC) ‘아동매매, 아동성매매,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(OPSC)’에 대한 지침을 발표
- 지침은 선택의정서상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실존하지 않는 아동이나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표현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
- 오픈넷은 지침에 대해 UN 아동권리위원회와 UN 아동매매 및 성착취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사례를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

아동 영상 리얼돌 문제

- 아동음란물 X
 -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, 유사 성교 행위,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,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

아동 형상 리얼돌 문제

아동형상 리얼돌 금지 국가

- | | |
|-------------|---|
| 영국 | 아동형상 리얼돌 유통 · 구매시 최대 12개월 이하 징역 |
| 캐나다 | 사춘기 이전 아동을 닮은 리얼돌 소지 금지 |
| 노르웨이 | 키 125cm이하 리얼돌 구매 금지 |
| 미국 | 아동형상 리얼돌 · 섹스로봇 금지하는 '크리퍼(CREEPER)법'
지난해 하원 통과 |
| 호주 | 아동형상 리얼돌 소지 금지 법안 정부 발의 |



자료: 각 국가 정부 홈페이지

※ [한국일보] 아동형상 리얼돌 금지 국가 그래픽=신동준 기자

아동 형상 리얼돌 문제

아청법 개정안(정인화의원 대표발의)

“아동신체형상성기구”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동(영유아를 포함)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장난감·인형 등의 물품을 말한다.”

감사합니다!

kkim@opennet.or.kr

8kkim8@gmail.com